

7/18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 제 1 1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03가합6020 손해배상(기)

원 고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대표자 총회장 김주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피 고 탁지원

서울 노원구 상계6동 주공아파트 115동 14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준

변 론 종 결 2005. 6. 24.

판 결 선 고 2005. 7. 8.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국내에서 전국에 발행, 배포되는 일간 조간신문 중 하나를 정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1면 하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그 아래 부분에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꽉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안상홍이 1948년 설립한 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월간지 '현대종교'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나. 피고는 2002. 4. 27. "한국의 신흥종교 2002 실태조사 연구집 I (부제 :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이라는 책을 약 2,000부를 발행하여 전국 기독교서점에 약 500부를 배포하였는데, 위 책자 145면에서 168면에는 원고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제목 하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에서 분파된 단체이다. 그러나 안식교가 조사심판설, 율법적인 구원관 등으로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부활과 영생, 삼위일체,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등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 단체는 1985년 사망한 안상홍씨를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로 자신들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머리말을 싣고, '1988년, 1994년 등 계속되는 시한부종말설의 불발과 이로 인한 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여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로 개칭하여 활동하고 있다. 1999년에는 특히 와이투케이(Y2K) 등의 사회여론과 이에 편승한 시한부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주장함으로써 이 단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실상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의 실상 등이 각 언론에 보도되었다. 1988년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여 사회에 회자된 적이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해를 바꿔가며 시한부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유포하는 한편 가족들과의 마찰로 가출하는 신도들로 인해 가족들의 탄원이 매년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이름을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였다가 전도에 지장을 초래하자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었다. 안상홍 증인회는 1988년 종말이 오며 지구는 혼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인침을 받은 144,000명 이외에 모조리 멸망한다고 한다. 안상홍씨의 첫 번째 소위 영적인 부인은 엄수인씨였다고 전해진다. 엄씨는 안상홍과 관계되기 전에 전남편과 이혼하였고, 1978년 안상홍씨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안상홍씨 사후 안상홍 증인회는 첫 부인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섬기는 파인 새언약유월절하나님의교회파와 1981년 장길자씨를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여 세우고 둘째 영적 부인을 어머니로 섬기는 파로 나뉘어졌으며, 생전의 안상홍이 늘 흰옷을 즐겨 입고 해운대 빈민가에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 사는 것을 고집했으며, 예배시 신을 신고 들어갈 수 없고, 여자들은 로마카톨릭과 같이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주요교리로 삼고 있다. 안상홍 증인회는 자신들의 주장에 꿰맞추기 위해 몇 가지 성경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간추려 보면 시편 132편 10-18절에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예언이 있는데 여기 일곱 뿔은 일곱 절기를

상징한다고 절기에 관한 교리를 찾아낸 안상홍씨 자신이 마지막 때의 '어린양이라고 주장한다. 이단과 사이비종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품은 자를 영혼의 사냥 대상으로 삼고 접근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의 주장은 약간의 기독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이비적 주장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도할 때 처음부터 안상홍씨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지난 2000년 2월 29일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를 이탈하여 이 단체의 실체를 공개한 정모씨가 신도 400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다. 이에 원고 교회는 피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2002. 6.경 피고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주장

원고 교회에 대한 위와 같은 책자의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교회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일간신문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발행한 원고 교회에 대한 위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의 내용이 모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책자 145쪽에서 원고 교회는 스스로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

고 “자신들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부분을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4,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가 그 정관, 교리집, 찬송가인 ‘새노래’ 등에서 교주인 망 안상홍을 성령 하나님 또는 재림 그리스도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한부종말론 등을 주장하기도 한 사실, 원고 교회 관계자 스스로도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카톨릭과도 다르고 수많은 개신교 교파와도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교회”, “기존 개신교의 한 종파로 바라 보지 말고 새로운 종교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존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교리 면에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부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고 교회가 1988년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 이래 해를 바꿔가며 시한부종말론을 유포하고, 이로 인하여 가출하는 신도의 가족들의 탄원이 매년 제기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7, 을 제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가 안상홍 사망 후 3년되는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바 있고, 1999년에는 신도들에게 1999년 지구멸망예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원고 교회 내에는 2012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는 사실, KBS 방송국의 “추적60분”, SBS 방송국의 “추적 사건과 사람들”, MBC 방송국의 “PD수첩”등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원고 교회의 시한부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한 사실, 원고 교회의 시한부종말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남편모임을 결성한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책자 내용 중 시한부종말론과 관련된 기술들이 그 표현이 정확 하지 못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 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의 불발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그 명칭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로 개칭하였다거나,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는 전도에 지장을 받게되자 하나님의 교회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는 1985년 안상홍 사망 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명칭을 쓰면서 약칭하여 안상홍 증인회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왔고, 1997년경 이 사건 종교단체의 재산을 등록, 관리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하여 사회적 비판 여론이 존재하였던 사실, 원고 교회가 현재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거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전도할 때에도 안상홍증인회라는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의 이 부분 적시가 반드시 전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영적 부인 엄수인과 원고 교회의 분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엄수인이 원고 교회의 전도 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영의 어머니라는 주장을 하다가 제명된 사실, 안상홍 사후에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원고 교회 간에 장길자를 영의 어머니라는 지도자로 추대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분리된 사

실이 있으므로, 결국 위 부분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안상홍의 생애 및 신을 벗어야 한다는 등의 예배 형식에 관한 기술 부분에 대하여 보면, 광 제20호증의 4, 을 제5,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기술은 당시 현대종교의 기자였던 김청이 직접 원고 교회측을 방문하여 실제로 경험하고 청취한 내용을 기사화한 현대종교 1985년 12월호 기사를 기초로 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를 허위라고 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라고 생각하면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부분 안상홍의 생애나 예배 형식에 관한 적시를 원고 교회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교리의 자의적 해석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상홍이 저술한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이라는 책자에, 일곱 뿔이 일곱 절기를 상징한다는 표현은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밖에 '다윗의 뿔', '마지막 때의 어린양' 등의 표현은 언급되고 있고, 위 기술은 제7안식일교회 잡지인 '목양자' 1994년 7, 8월호를 근거로 한 것이며, 위 교리 부분 및 이어지는 이단과 사이비종교에 대한 언급은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 교회의 교리 및 이단과 사이비종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기술 또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원고 교회에 속하였다가 이탈한 정모씨 폭행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에 관한 2000. 3. 8.자 기독신문 및 정인자 등의 진술에 기하여 이를 기술한 것이고, 그 후 기독신문이 위 사건과 관련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반론보도문의 게재일 뿐 반드시 위 기사가 허위이거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을 뿐 아니

라, 위와 관련한 약식명령(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고약22814호)에도 원고 교회의 신도 300여 명이 정인자의 비디오대여점 앞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그 중 일부 신도와 위 정인자가 상호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 따라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은 그 세부적인 점에서 표현이 잘못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원고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해석하기에 따라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부분 또한 있다고 하겠으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이 사건 책자의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그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책자를 원고 교회에서 발간한 교리서 등의 각종 서적, 피고의 부(父)인 망 탁명환의 연구 자료, 피고가 경영하는 출판사의 기자들이 직접 원고 교회를 방문하고 취재한 내용, 각 신문 내지 방송사의 취재 내용, 원고 교회에 몸담았다가 이탈한 목사 및 신도들의 진술, 원고 교회에 대한 제보 및 피해상담 결과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책자의 작성 과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보여지고 달리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며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그리고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로서도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라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해손되거나 해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책자가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한국의 종교단체 실태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구집의 형태로 출간된 사실, 이 사건 책자의 주된 내용이 기존 기독교의 관점에서 원고 교회의 신앙, 교리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책자를 출간한 목적은 기존의 기독교 교단과 성도들에게 기존 기독교의 교리와 다른 교리를 표방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이 사건 책자의 머리말 참조), 이 사건 책자는 주로 기독교 서점을 통하여 기존 기독교인들에게 반포, 판매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책자의 출간 목적 및 경위, 그 내용과 성질, 표현 내용과 방법,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교회는 피고로부터 교리상으로 볼 때 이단성이 있다고 공격받은 것이어서 그 명예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이단 종교의 역기능이 사회



적으로 큰 문제화되고 있는 요즘 피고가 이 사건 책자에서 원고 교회에 대하여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교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교회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한식 \_\_\_\_\_

판사      이동욱 \_\_\_\_\_

판사      김유경 \_\_\_\_\_

2021.3.22

정본입니다.

2005.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민 병



상소안내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